

의안번호	2205490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5. 1. 7.
추계번호	24D50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 계획)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지역 사랑상품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10조의2 (가맹점에 대한 지원)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단,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의무·재량 규정
5	안 제15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신설	미대상: 현행법 제15조의3 ¹⁾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동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 내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1억원이 편성 ²⁾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	안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제2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미대상: 현행법 제15조의2 ³⁾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5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동 예산을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 내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현행법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행정안전부 2024년 사업설명자료
- 현행법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2. 상세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안 제4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2024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중인 19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수행 등을 위해 기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참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4)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2024년 11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별 가맹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별 가맹점 현황

지역	개소수
서울특별시	519,271
부산광역시	173,917
대구광역시	112,842
인천광역시	109,008
광주광역시	59,573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현행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70,353
울산광역시	51,173
세종특별자치시	14,916
경기도	421,126
강원특별자치도	218,508
충청북도	85,343
충청남도	89,010
전북특별자치도	90,599
전라남도	76,182
경상북도	119,506
경상남도	407,366
제주특별자치도	45,000
합 계	2,663,693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운영비용 지원 의무화 및 할인을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 지원 요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요구서에 반영(안 제15조)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은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3,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재정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행 지자체 수 (국비 지원 지자체 수)	66 (4)	172 (144)	185 (154)	187 (184)	188 (181)	190 (157)	190 (153)
예산(국비)	100	884	6,690	12,522	8,050	3,522	3,000

주: 지방비 예산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 현행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10%의 할인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비 지원 비율

구분	인구감소지역 ⁵⁾	일반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성남, 화성)
할인율	할인율 10%	할인율 7~10%	할인율 자율
국비지원율	국비지원율 5% 지방비 부담 5%	국비지원율 2% 지방비 부담 5~8%	국비지원 없음

주: 제시된 할인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할인율이며,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하되, 인구·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지원 규모, 할인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개정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
 -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4년 기준 190개(광역 11개, 기초 179개)⁶⁾⁷⁾임
 - －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원칙적으로 1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할 경우, 현재 국가 지원을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수준이 7~10%임을 고려할 때, 추가 할인율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 지원 요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 규모 등에

5)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지정된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임

6)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7) 미발행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충청북도 등)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미발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인구·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할인을 완화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지원 증가 규모, 지방자치단체별 할인을 증가 폭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의 재정 지원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지원 신청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 2024년 기준 190개 지자체 발행 중

- (광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발행 중(6개 시·도 미발행)
- (기초) 226개 시·군·구 중 179개 시·군·구가 발행(47곳은 미발행)

구분	발행 지자체	미발행 지자체
합계	190개(광역 11개, 기초 179개)	53개(광역 6개, 기초 47개)
서울	서울특별시(광역), 25개 자치구	
부산	부산광역시(광역),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대구광역시(광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인천광역시(광역),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광주광역시(광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전광역시(광역),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광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광역)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파천, 가평, 연천	경기(광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광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북(광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광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광역)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광역)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북(광역)
경남	경상남도(광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	
제주	제주도(광역)	

자료: 행정안전부